

2011. 12. 7. ~ 12. 13.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11. 16.(수)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11. 17.(목)

2. 제안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기금조성 현황(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증 감	
중소기업육성기금	4,004	632	0	632	4,636
옥외광고정비기금	23	23	0	23	46
재 난 관 리 기 금	816	753	910	△157	659

4.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 】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2012년도 기금운용(조성)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0억 400만 원과 출연금 5억 원 및 이자수입 1억 3,200만 원으로 총 46억 3,600만 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 옥외광고물정비기금 】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0년 3월 29일 조례 제1967호로 제정되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기금 2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2012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300만 원과 출연금 2,000만 원 및 이자수입·기타수입 300만 원으로 총 4,600만 원 조성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음.

【 재난관리기금 】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신속한 복구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2012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임.

- 2012년도 기금운용(구성)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억 1,600만 원과 출연금 2억 5,000만 원, 보조금 및 이자수입 5억 300만 원으로 총 15억 6,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죽동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 8억 원, 월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보조금 잔액 반환금 1억 원으로 총 9억 1,0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말 잔액은 6억 5,900만 원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 2012.1.26]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